(건축-010) ○○지구 공동주택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붐대 파단사고

공사명	○○○익스프레스 3차 신축공사				
사고일시	2017년 12월 18일(월) 14:40분경		기상상태	흐림	
소재지	경기도 평택시	사고 종류	파열(파단)		
구조물 손실	-	인적피해	사망 1명, 부상 3명		
장비 손실	타워크레인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〇)	, 해당없음()	

가. 사고개요

1) 공사개요

○ 용도 : 공동주택

○ 연면적 : 348,118㎡

규모: 지하 3층/지상 23~29층공사기간: 2016.5~2019.1

2) 사고경위

 타워크레인 마스트 연장(23단→26단)을 위하여 클라이밍 케이지를 상승하던 중 케이지의 낙하충격으로 마스트와 지브가 파손되면서 케이지 작업발판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 추락(사망), 3명 부상

3) 사고원인

- 케이지를 상승한 후 마스트(24단)를 체결하려는 순간, 클라이밍 케이지 하부의 슈 거치대 (마스트에 부착) 또는 실린더 맴버가 파단되며 케이지가 3m 아래로 추락
- 이 충격으로 마스트, 지브(55m) 및 케이지의 발판과 난간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

나. 재발방지대책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에 의거하여 타워크레인 설치·조립·해체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치·조립 및 해체순서,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등의 작업세부 계획이 수립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작업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잘 보이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.
-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여 대칭되도록 차례로 결합, 분해하여야 한다.
- 기상상태가 불안정하거나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.
- 크레인의 성능, 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(應力)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, 기초부의 파손, 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사고 사진 클라이밍 케이지 현황





